

천문대 규정

개정 : 2013.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천체현상의 관측, 천문우주과학의 연구와 교육 및 보급, 전시장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희대학교 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천문대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다만 관측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천문대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본교 「처무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지원실
2. 연구지원실

제4조(구성) ① 천문대에는 천문대장 1인과, 운영지원실장 1인, 연구지원실장 1인을 둔다.

② 천문대에는 약간명의 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5조(천문대장) ① 천문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천문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천문대장은 대내외적으로 천문대를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천문대 업무의 계획 및 집행
2. 예산편성 및 업무 운영결과 보고
3. 보유 기기의 유지 및 관리
4. 기타 천문대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장) 운영지원실과 연구지원실의 각 실장은 천문대 직원 중 천문대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지원실장은 건물의 유지관리, 천문대 및 전시장의 운영과 전시물의 유지, 관리, 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구지원실장은 천체 망원경을 포함한 모든 천문대 관련 기기 및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천문대의 운영 및 전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국제부총장, 사무처장, 응용과학대학장, 천문대장, 우주과학과 학과장의 당연직 위원과 천문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본교 전임교원 2인으로 구성하며, 국제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천문대 운영지원실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9조(망원경의 사용) 천문대 망원경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관측개시일 1일 전까지 관측계획서 (관측일시, 관측대상, 사용기기 등)를 천문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천문대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알린다.

제10조(시설개방) 천문대의 전시장은 학생 및 일반에게 09:30 ~ 17:00 개방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11조(단체견학) 전시장을 견학하고자 하는 단체는 견학 1주일 전에 천문대 홈페이지 견학신청란에 신청하여 천문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시설 기재) 천문대의 시설과 기기를 이용한 학술논문에는 본교 천문대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4장 재정 / 기타

제13조(재정) 천문대의 재정은 본교 배정예산과 외부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문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과 총장의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